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제 43 호
2018년3월6일(화)

여 수 시 보

시 정 방 침

- 1. 함께하는 소통시정
- 1. 활력있는 지역경제
- 1. 수준높은 교육복지
- 1. 앞서가는 해양관광
- 1. 걱정없는 안전사회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8-579호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 /3
- 여수시 공고 제2018-583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4
- 여수시 공고 제2018-589호 도로 지정 공고(돌산읍 우두리 475-17, 475-24) /5
- 여수시 쌍봉동 공고 제2018-20호 쌍봉동 통장(56통) 모집 공고 /6

【기 타】

- 여수시 조례 제2018-1321호 여수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9
- 여수시 조례 제2018-1322호 여수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5
- 여수시 조례 제2018-1323호 여수시 거리문화공연사업 관리 및 지원 조례안 /19
- 여수시 조례 제2018-1324호 여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 여수시 조례 제2018-1325호 여수시 지구토지구획정리분담금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39
- 여수시 조례 제2018-1326호 여수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41
- 여수시 조례 제2018-1327호 여수시 도시계획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43
- 여수시 조례 제2018-1328호 여수시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5
- 여수시 규칙 제682호 여수시 도시계획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50

회								
판								

여수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라 신고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건설업의 폐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폐업 처리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6일

여 수 시 장

1. 폐업대상 업체

상 호	영업 소재지	폐업대상 건설업종	업종등록번호	폐업일자	폐업사유
(합)대신기공 김응진	여수산단2로15 (주삼동)	기계설비공사업	여수2016-10-13	2018. 3. 5.	사업포기

2. 공고 기간 : 2018. 3. 6. ~ 3.21.(15일)

3. 공고 장소 : 여수시 홈페이지 및 시보

4. 기타

본 신고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 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 고지서를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 합니다.

2018. 3. 6.

여 수 시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03. 6. ~ 2018. 03. 22일까지
3. 공고장소 : 시 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4. 송달하고자 하는 과태료 처분 내용

업종	업소명	소재지	업주명	처분사유	처분명	처분근거
휴게음식점	커피베이 학동점 (제2016-0506275)	여수시 흥국로 32-10(학동)	이☆화	2017년 휴게음식점 기존영업주 식품위생교육미이수	과태료 20만원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01조

5. 고지사항

위 당사자는 2018.3.31일까지 여수시보건소 식품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납부 가능).

아울러 위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 및 증가산금 부과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 본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여수시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이후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재적발될 경우 2차 위반에 해당되어 가중처분 되오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여수시 식품위생과 위생지도팀 김행아 ☎(061) 659-4233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475-24번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 11호,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고
합계	62	7	472		
돌산읍 우두리 475-24	7	7	50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돌산읍 우두리 475-17	55	7	422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3. 6.

여 수 시 장

통 장 모 집 공 고

쌍봉동 56통장의 사직에 따라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 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 관할 통장을 모집하오니, 희망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모집통장 : 56통장

- 관할구역 : 56통(주은금호아파트 305동, 306동)

2. 공고(접수)기간 : '18. 3. 6. ~ '17. 3. 16. 【10일간】

3. 접수장소 : 쌍봉동주민센터[여수시 흥국로 25(학동)]

4. 신청자격

- 가. 모집공고일 기준 당해 통 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 나.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5. 신청 제외자

- 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선출방법

- 가. 신청자가 1인일 경우 심사 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동장 직권임명
 - 나.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선임기준안에 의한 심사를 거쳐 동장이 최종선임
 - 다.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추천자 중 1인을 동장이 임명
- ※공동주택 통장후보지원자는 지원신청서를 관리사무소로 제출

7. 제출서류

- 가. 통장후보자지원신청서 1부, 주민추천서 1부
- 나. 기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할 서류(경력에 따라 별도 추가 가점배정)
 - 사회복지시설 및 봉사단체 경력증명서, 상훈(표창장 등 사본)

8. 기타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제출서류의 경력 및 자격내용 허위판명 즉시 통장 임명을 해임합니다.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쌍봉동주민센터 (☎659-15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3. 6.

쌍 봉 동 장

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지원대상	여수시 쌍봉동 ()통장						
사 진 (3×4cm)	성 명	(한자)		생년 월일	(연령 만 세)	성별	남·여
	주 소			거주 기간 ~ 현재(년) (해당 리·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연락처	휴대폰 자택(사무실)		이메일	@		
	직 업	(구체적 기재)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년	월	일	내 용			비고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	봉사활동 장소		활동기간	활동시간	활동내용		비고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훈격 (기관명)		수상부문		수상일자		비고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과 관련 필요사항을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하며, 「여수시 이장·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수시 쌍봉동장 귀하

- ※ 첨부 : 1. 주민등록등·초본, 2. 자격 및 주요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3. 주민총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경우 추천서 및 회의록(해당자에 한함)
 4. 주민 20명 이상 추천의 경우 주민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제18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3월 6일

여 수 시 장

이철현



여수시 조례 제1321호

붙임 여수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부.

여수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체계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전라남도(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와 여수시 간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여수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 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촉진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등의 자치분권에 관한 계획을 바탕으로 3년 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자치분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자치분권과 관련하여 시민·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등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활동(이하 “자치분권촉진 시민활동”이라 한다)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여수시자치분권협의회

제7조(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자치분권촉진 시민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여수시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했던 자
3. 자치분권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자치분권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두루 갖춘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2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임기만료 6개월 전에 해촉된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는 매년 1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다만,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직을 요청하는 경우
2.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자치 업무부서의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
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자치분권 촉진 사업 및 주민참여

제15조(자치분권 촉진 사업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관·단체 지원사업
2. 자치분권 추진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
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
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인등이 자치분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 등에
대하여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세부
적인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풀뿌리 주민자치 촉진) 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
여예산제도·주민발의제도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개선·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 자원봉사활동과 자치분권촉진 시민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
로써 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마을자치의 기반을 촉진하는 시책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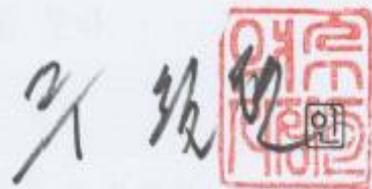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8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3월 6 일

여수시장



여수시 조례 제1322호

붙임 여수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여수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여수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수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력 활동
5.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고,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④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6조(운영)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 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평상 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 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등의 협력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관련 협력활동 전개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
난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
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8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거리문화
공연사업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3월 6 일

여 수 시 장

이원환



여수시 조례 제1323호

붙임 여수시 거리문화공연사업 관리 및 지원 조례안 1부.

여수시 거리문화공연사업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문화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문화공연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상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문화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노래, 악기연주,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문화공연가”란 거리문화공연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문화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문화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문화공연사업 추진) ① 시장은 거리문화공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거리문화공연가의 발굴 및 관리
2. 거리문화공연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사업
3.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 거리문화공연가, 관련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거리문화공연 관리) 시장은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 또는 운영할 수 있다.

1. 거리문화공연장소(Busking Zone)
2. 거리문화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
3.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거리문화공연의 지원) 시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거리문화공연 희망 및 공연 가능단체 육성·지원
2. 거리문화공연가 오디션 실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거리문화공연 시 준수사항) ① 거리문화공연가는 거리문화공연활동을 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위탁관리사업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 거리문화공연가는 거리문화공연 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야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장은 주민 소음피해 예방과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공공장소 이용자 및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거리문화공연가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거리문화공연사업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여수시 문화예술발전과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거리문화공연과 관련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8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3월 6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조례 제1324호

붙임 여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여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림”이란 시민의 보건휴양, 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목적으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단,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2.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경관숲”이란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4.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생활·교통 환경개선 및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목적으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 이 조례는 시에서 관할하는 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녹화 및 도시림등의 경관향상을 위하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선별로 전산화된 가로수관리대장을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제5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① 시장은 도시림등의 실태를 조사·분석한 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관리계획의 성과(成果) 및 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조성 장소) ① 시장은 시민의 접근성이 좋고,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도시림등을 조성할 수 있다.

1. 생활주변 및 도로변 자투리땅
2. 국·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공간
3. 그 밖에 경관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가로수의 조성·관리 대상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 중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장소로 한다.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지방도·시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면도·리도

4.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접도구역(接道區域)

③ 제1항에 따라 도시림등을 조성하는 경우 주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조성방법) ① 도시림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목은 가급적 향토수종을 식재하되, 조경수로서 가치가 높은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히 혼식(混植)한다.

2.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자연에 가까운 수목형이나 산림형으로 조성한다.

3. 교목 중심으로 조성하되, 계절 및 경관을 고려하여 관목과 초화류를 적절히 혼식한다.

② 가로수는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하며 도로별 가로수 조성 규격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현지여건에 따라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③ 수목을 보도 및 그 주변에 식재하는 경우 이동차량 및 제설제 등으로부터 수목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식재한다.

제8조(지형·토양의 보호) ① 도시림의 조성지 또는 계획지(이하 “조성지등”이라 한다)의 토양에서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의 조성지등에서는 지형을 변경하는 절·성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변에 시각적 차단이 필요한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 조성이 필요한 경우의 성토

2.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서의 절·성토

3. 도로의 신설, 개축, 수선, 유지 또는 보수공사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절·성토

4. 그 밖에 도시림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성토

③ 도시림등 조성지의 토양이 답압(踏壓) 또는 오염 등으로 척박화 되어 수목의 생육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객토 또는 시비(施肥)하여야 한다.

④ 수목의 식재나 지형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보존가치가 있는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보관하여 재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설치) ① 가로수 보호틀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별표 2에 따라 도로 노선별로 보도폭을 기준으로 설치·관리한다.

② 도로가 신설되거나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 도로관리 부서는 가로수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대하여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보강·교체할 수 있다.

제10조(병충해 방제) 병충해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담당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병충해 방제작업 전에 그 계획을 고지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수목에 대하여는 가지치기, 바퀴심기, 메워심기 등 임업적 방제를 우선하여 실시한다.

3. 제2호에 따른 임업적 방제로는 병충해 방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제를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독성 약제를 사용하여 생태계 교란 및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한다.

제11조(수목의 교체) ① 도시림등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목이 있는 경우 이를 바퀴심기 또는 메워심기(이하 “바퀴심기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교체한다.

1. 고사된 수목

2. 수피 또는 수형이 극히 불량한 수목
3. 수간이 부러졌거나 부러질 위험이 있는 수목
4. 병충해 또는 재해·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수목
5. 기타 시장이 바뀌심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

② 제1항에 따른 바뀌심기 등은 현지를 조사하여 적기에 실시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한 후 돌아오는 식재 시기에 실시한다.

제12조(가지치기) ① 수목의 가지치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가급적 자연형이 되도록 실시한다.

1.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과 아름다운 수형의 유지
2. 신호등,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에 대한 시야 확보
3. 보행자, 자동차 등의 통행공간 확보
4. 기타 전기·통신시설물의 피해예방 등

② 가지치기를 실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장 또는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관련 교육 이수
2. 조경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단체에서 교육 이수

제13조(가로수 점검) ① 시장은 매년 11월에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 발생 등으로 시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거나 식재, 메워심기, 바뀌심기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바뀌심기가 필요한 가로수 파악
2. 메워심기가 필요한 고사목 파악
3. 수목의 병충해 감염여부 확인

4. 수목의 생육상태 및 토양상태 확인
5. 기타 수목의 신규식재 가능장소 확인 등

제3장 도시림등의 협의 및 승인

제14조(협의 등) ① 도로관리 부서는 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획단계부터 가로수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를 신설, 변경 또는 폐기하여 산지 및 토지의 전용이 필요하거나 관련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안전시설물이나 통신·전기시설이 신설 또는 교체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가 새로이 포장되거나 교체되는 경우

② 가로수관리 부서는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사업 계획에 가로수 조성계획이 포함되는지 여부
2. 도로사업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는지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 시 위치선정 등에 관한 적정성 여부
4.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지하매설 가능성 여부
5. 보도 포장시설의 신설·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여부
6. 그 밖에 관련 법령, 조성·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등

제15조(승인신청) ① 시장 외의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이식 또는 제거

3. 가로수의 가지치기

4. 기타 도시림등 조성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내용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관련 법령, 조례 및 조성·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재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신청 요청을 받는 경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부담) ①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청인은 그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의 산출은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비용을 신청인이 납부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로의 점·사용 허가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를 이식 또는 이설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가로수의 규격이 근원경 20cm 또는 흉고 직경 18cm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가로수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시에 위치한 조경관련업체를 통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 및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림 등 관리시설물이 자동차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에게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납부 고지) ① 시장은 신청인 또는 원인자에게 제16조에 따른 비용을 기간 내 납부하여 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인 또는 원인자가 기간 내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납부하여 줄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기한 내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승인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여수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제18조(설치) 시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가로수 관련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림등 관리부서의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림등 관련 전문가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시림등 업무관련 부서의 장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2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제24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22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립등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제23조(대리참석)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하게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제24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는 등 직무에 태만한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사직을 신청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장 보칙

제25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도시립등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하여야 한다.

1. 도시림등 병충해 발생신고
2. 도시림등에 재해발생 시 필요한 협조
3. 가로수 물주기 등 가로수 생육에 필요한 사항
4. 가로수가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신고
5. 기타 도시림등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등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등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가로수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③ 시장은 시민이 도시림등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물품 및 장비를 지급하거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6조(감독) 가로수의 식재·이식 또는 가지치기 등 가로수의 관리는 담당공무원의 감독 아래 실시되어야 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구 조례 「여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에 따른 여수시 가로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여수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이 되며, 그 임기는 여수시 가로수위원회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별표 1]

도로별 가로수 조성 규격(제7조 제2항 관련)

구 분	식재규격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가슴높이지름 8cm 이상, 근원지름 10cm 이상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이상~10미터 미만	가슴높이지름 8cm 이상, 근원지름 10cm 이상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이상~7미터 미만	가슴높이지름 8cm 이상, 근원지름 10cm 이상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가슴높이지름 6cm 이상, 근원지름 8cm 이상	

가로수관리 시설물의 규격 및 종류(제9조 제1항 관련)

구 분	시설물 규격 및 종류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보호덮개는 입지여건에 따라 지피 식물 식재로 대체가능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10미터 미만	"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 7미터 미만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	

[별표 3]

비용 부담의 산정기준(제16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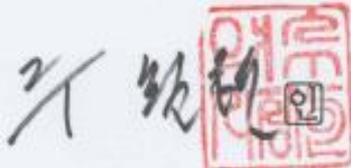
<p>△ 피 해 발 생 의 경 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비용 부담금 산출내역 별지 3호)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 + 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10% + 실작업비
<p>△ 피 해 이 외 의 원 인 발 생 의 이 유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옮겨심기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나. 관리청에서 옮겨심기 하는 경우 ⇒ 부담금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 부담금 = 수목대금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 도급공사설계비는 별지3호 비용 부담금 산출내역 부담금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물가정보 및 물가자료 등 시중가격 정보지를 적용하고 이에도 없을 경우 관리청에서 받은 견적 가격 적용함.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 후 이식목에 대한 조경수로서 의 가치 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서						
신청인	성명 (명칭)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위치					
	수종	규격	수고 : 흉고직경 : , 근원직경 :	수량	본	
이식사유						
작업방법						
작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승인조건						
부담금	금액	금	원정()			
	납부기간					
<p>여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여수시장직인</p>						

제18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구토지구획
정리분담금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3월 6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조례 제1325호

붙임 여수시 지구토지구획정리분담금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부.

여수시 조례 제1325호

여수시 지구토지구획정리분담금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여수시지구 토지구획정리분담금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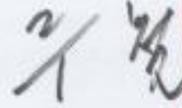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8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3월 6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조례 제1326호

붙임 여수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부.

여수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여수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체비지 및 집행잔액은 이 조례 시행 후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이입 조치한다.

제18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도시계획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3월 6 일

여 수 시 장

이 선 선



여수시 조례 제1327호

붙임 여수시 도시계획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1부.

여수시 조례 제1327호

여수시 도시계획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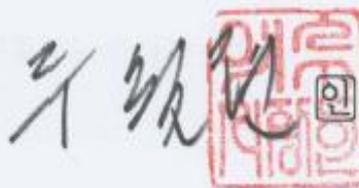
여수시 도시계획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8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3월 6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조례 제1328호

붙임 여수시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여수시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자 여수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여수시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 자문 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주요시책
2.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
3. 지역경제에 관하여 타 시·군·구 및 시·도와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경제 유관기관 간 협의·조정
5.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요청하는 사항
6. 일자리 창출 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경제해양수산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제관련 단체·기업체·공공기관·금융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이하 “경제단체 대표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

2. 지역경제·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장은 제8조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제출한 경제단체 대표 등을 협의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며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직을 신청하는 경우나 해촉된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임기만료 6개월 전에 사직하거나, 제3조제5항에 따라 해촉되는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감독 하는 등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경제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다만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전까지 각 위원, 경제 단체 대표 등에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제출하도록 서면·전자우편 및 기타의 방법(이하 “서면 등”이라 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안 제출을 통보 받은 자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이 있는 경우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서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출받은 안건을 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 회의개최 전까지 의견을 받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안건의 배부) 위원장은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이 확정되면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회의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한 후 회의록이 첨부된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 받은 협의회 심의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실무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 상정안건을 사전에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

제14조(경제자문단)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경제자문단을 둘 수 있다.

1. 시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발굴에 대한 사항

② 경제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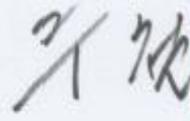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7년 제22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여수시
도시계획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3월 6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규칙 제682호

붙임 여수시 도시계획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여수시 도시계획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여수시 도시계획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